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0회 임시회 (2024. 8. 3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90
- 나. 제안자: 고병준 의원 외 7인
- 다. 제안일자: 2024년 8월 16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8월 19일(월)

2. 제안사유

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상한선을 확대하여 청년정책에 지원 대상을 넓혀 마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청년의 연령을 확대하여 정의함(안 제3조제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24. 7. 23. ~ 7. 29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본 개정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상한선을 확대하여 청년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임.
- 최근, 지역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, 기존의 청년과 중년의 사이에 있는 35세~39세 인구를 청년으로 포함하여 청년실업 장기화, 불안정한 심리 등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연령 상향이 필요함.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¹⁾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을 “19세 이상 39세 이하”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,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기본 조례 중 22개 자치구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.

1) 「청년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< 자치구 청년 연령 현황 >

| 구 분 | 자치구 |
|---------------|--|
| 15세 이상 29세 이하 | 1개 구 (금천구) |
| 19세 이상 34세 이하 | 1개 구 (마포구) |
| 19세 이상 39세 이하 | 22개 구 (강남구, 강동구, 강북구, 강서구, 관악구, 광진구, 노원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성북구, 송파구, 양천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구, 구로구, 서대문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중랑구, 동작구) |
| 19세 이상 45세 이하 | 1개 구 (도봉구) |

- 마포구 청년의 연령을 상향할 경우 2024년 7월 기준 마포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25,498명²⁾으로서 청년 연령 확대로 인해 28,813명이 대상자에 추가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이와 같이 검토한 바,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기존 연령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타당함.
- 또한, 동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규정으로 인해 입법으로서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,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도 충족하고 있어 자치법규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2)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

■ 「청년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